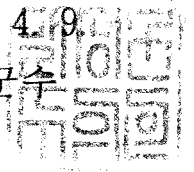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18111
----------	-------

제출일자 : 2020. 4. 9.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2020. 2. 18.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주민세 등을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자

- (1)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2)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
- (3)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국가 및 대구시),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
- (4)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민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나. 감면 세목(2020년도에 한함)

- (1)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50,000원을 면제한다.
- (2)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0억 원 이하 법인
 - 법인 균등분 주민세 50,000원을 면제한다.

(3)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코로나19 지원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한다.
-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급여 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4)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춘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임대료 인하액의 10%)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3. 감면 추계액 : 6.5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계	주 민 세				재 산 세	비고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사업자 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6.5	4.8	1.7	-	-	-	
코로나19지원 의료기관	-	-	-	향후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지정 시 산정 가능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	-	-	-	건물주가 신청 시 세액계산을 통해 산정 가능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및 착한 임대료 관련 재산세 감면은 추계액에 미포함

4. 기타사항

-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3)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련공문

- (1) 지방세 지원계획 통보 공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0.2.5.)
- (2)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 1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을·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 지방세법

-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u>그 밖의 법인</u>	<u>50,000원</u>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법인의 표준세율 중 감면 대상자 범위 요약표

종업원 \ 자본금액	10억원이하	10~30억원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초과
100인 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 이하	5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생략)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8., 2019. 12. 31.>

1. 담배소매인
2. 삭제 <2015. 12. 31.>
3. 삭제 <2015. 12. 31.>
4. 연탄·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 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 2 행정안전부 공문

※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0. 2.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계획

□ 추진 배경

-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 지방세 지원 필요

▪ 메르스 당시('15년) 지방세 지원: 총 14.6억원(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감면 3.4억원, 납기연장 6억원, 징수유예 5.2억원 등)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예: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대상 적극 지원 및 주민홍보 실시

제2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
11.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12.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 | | |
|---|----|
| 1.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2면 |
|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자학 의원 등 10인 발의) | 2면 |
|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 2면 |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발의) | 2면 |
|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일용 의원 발의)
..... | 2면 |
|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 2면 |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면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면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2면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면
11.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2면
12.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제출)	2면
13.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추천의 건(의장 제의)	3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자학 의원 등 10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안(이대곤 의원 등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일용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
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
면 동의안(군수 제출)
12.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
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

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와 선출된 주민대표위원의 승낙을 받은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서재 1리 손규수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최상국	서도원	구자학	하중환
김정태	이대곤	김보경	신동윤
도일용	김은영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석
전문위원	곽병하
전문위원	배수호
의사담당	박은영
지방행정주사	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	배진영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